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근무할 한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.

2023년 11월 10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
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분야	채용등급	채용인원	임용기간 (근무시간)	직무내용
입법지원 요원	지방한시 임기제 7호	1명	임용일~ 2024.9.30. (주 35시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조례안, 예산안, 결산안, 청원 등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○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·조사·연구○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및 위원회 주관 공청회, 세미나, 간담회 등 운영○ 행정사무감사·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○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등○ 전문위원 보좌

2. 법령 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16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

3. 응시 자격 요건

□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
- 연령 : 만 20세 이상
- 지역·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- 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 - 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 - 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 - 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 - 마. 삭제 <2022. 1. 4.>
 - 바. 삭제 <2022. 1. 4.>
 - 사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 - 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 - 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자세히 확인

□ **분야별 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**

○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

채용등급	응시 자격 요건
지방한시 임기제7호	1. 학사학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.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*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: 국회, 지방의회, 국가, 지방자치단체(지방공기업, 출자·출연기관 포함), '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(alio.go.kr)'에서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<u>법제, 법률해석, 지방행정, 지방자치, 감사, 예산</u> 등에 관한 기획·연구·조사·분석·입법 지원 등의 실무경력 (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상세히 명시)

- ※ 경력기준에 응시하는 경우,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이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**10년**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)
- ※ “졸업자등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.
- ※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(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- ※ 전임근무(주40시간, 1일 8시간 기준)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하며(예시: 주 35시간 근무), 전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

4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□ 응시원서 접수

○ 접수기간 : 2023. 11. 21.(화) ~ 11. 23.(목), [3일간, 09:00~18:00]

○ 접수방법 :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

○ 응시수수료 : 7,000원

- 납부방법 : (방문)광진구 수입증지 날인, (등기)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

< 방문접수 >

- 접수장소 :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76, 5층 의회사무국 의정팀

- 접수시간 : 평일 09:00 ~ 18:00 / 점심시간(12:00 ~ 13:00) 제외

※ 접수마감일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

- 광진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

※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를 날인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
< 등기우편 접수 >

- 주소 : (우)05065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76, 의회사무국 5층 의정팀

- 원서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에 한해 유효

- 채용분야 응시수수료(7,000원)에 해당하는 통상환증서를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

※ 대한민국 '정부수입인지' 사용 불가

※ 우편접수 시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요청(02-2049-4637)

※ 우편 접수 시 기재 서류 미비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

※ 우편봉투 겉면에 "2023년 광진구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" 문구 표기

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료 면제(해당자는 증명서 제출)

※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해 사용

※ 인터넷, 퀵서비스, 택배 등을 이용한 접수 불가

□ 시험일정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	면접시험		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임용일자
	일시	장소		
'23. 12. 11.(월)	'23. 12. 15.(금)	구의회 6층 브리핑실	'23. 12. 18.(월)	'24. 1. 2.주 [예정]

※ 면접시험 공고 및 발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홈페이지(council.gwangjin.go.kr)에 게시

※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□ 시험방법 : 경력경쟁임용

○ 1차 시험(서류전형) - 광진구의회 홈페이지 공고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

○ 2차 시험(면접시험) - 광진구의회 홈페이지 공고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평가방식 :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능력 등이 담긴 평정요소를 각각 상·중·하로 평가 후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평정요소 : 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㉡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, 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- (동점자 발생 시) 면접시험 평정요소 ㉠ ~ ㉣ 순에 따라 평정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

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
○ 최종합격자 발표 - 합격자 개별통보, 광진구의회 홈페이지 공고

- (추가합격)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및 임용 후 퇴직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5.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

- 보 수** :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30의 2에서 정하는 봉급 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(한시임기제 주 35시간)에 비례하여 지급

채용등급	근무시간	봉급기준액(주 40시간)	주 35시간 환산 봉급액
한시임기제 7호	주 35시간, 5일 (1일 7시간)	2,158,500원	1,888,680원

※ 보수는 2024년 기준으로, 변동 시 그에 따름

- 수 당** 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(직급보조비, 초과근무수당, 가족수당, 연가보상비 등)

6. 제출서류

공통사항(필수사항)

○ 응시원서(별지1호 서식) 1부

- 응시수수료 : 7,000원

- 광진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증지 날인
- 등기우편 접수 시 통상환증서 동봉

※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원서접수처(광진구의회사무국)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광진구청 민원어권과에서 증지를 날인해 오시기 바랍니다.

○ 이력서(별지2호 서식)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
○ 자기소개서(별지3호 서식) 1부

○ 직무수행계획서(별지4호 서식) 1부

○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(별지5호 서식) 1부

○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(별지6호 서식) 1부

○ 주민등록초본(남성의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.

○ 채용 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- 경력(재직)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
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(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 범위 해당 업무를 반드시 기재)를 정확히 기재

-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 담당자 서명(날인)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

-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회사의 폐업·파산·합병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
- 비상근,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 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
□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해 제출)

-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
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7호 서식) 1부
 -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추가로 제출
- 응시자격 관련 증빙자료(자격증, 어학검정서 등)
(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)
-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(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, 상훈 등)
 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한글 번역본(공증필) 반드시 첨부
 - ※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
 - ※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7. 기타(유의)사항

- **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**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,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합니다.
(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)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(☎ 02-2049-4637)

직무기술서

임용예정기관(근무예정부서)	임용예정직급	채용인원	임기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(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)	지방한시임기제 7호	1명	임용일~2024.9.30.
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례안, 예산안, 결의안, 청원 등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•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·조사·연구 등 •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및 위원회 주관 공청회, 세미나, 간담회 등 운영 • 행정사무감사·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•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등 • 전문위원 보좌
-------------	---
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의사소통 및 팀워크 등 • 회기운영, 의사진행, 입법,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력 • 위원회 소관 각종 조례안과 예·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능력 •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 분석·연구를 통한 합리적 대안제시 능력
-------------	---
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의회 회기 운영, 의사진행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관련 지식 • 예·결산 자료 검토 및 분석에 대한 지식 •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처리를 위한 관련법령 및 규정관련 지식 •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지식
-------------	---

응시요건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.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*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: 국회, 지방의회, 국가, 지방자치단체(지방공기업, 출자·출연기관 포함), '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(alio.go.kr)'에서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<u>법제, 법률해석, 지방행정, 지방자치, 감사, 예산</u> 등에 관한 기획·연구·조사·분석·입법 지원 등의 실무경력</p> <p>(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상세히 명시)</p>
-------------	--

붙임 제출서류 서식 각 1부(별도 첨부). 끝.